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자치분권·사회연대경제·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폐지하면서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의 명칭을 참여혁신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체계적·효율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30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데이터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팀장·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데이터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팀장·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5.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6.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

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7.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4조제13항(중전의 제14항) 제1호 중 “재난안전 분야”를 “부 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안전 관련”을 “부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안전 분야”를 “부 내 업무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안전 분야”를 “부 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의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제14항(중전의 제13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공공인공지능혁신과·공공데이터정책과·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9.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3.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23.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4. 공공부문 인공지능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공부문 인공지능서비스 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발굴 및 활용에 관
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
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역량 진단, 지표관리 및 컨설팅
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
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
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
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행정정보공유과 및 국민맞춤서비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17.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8.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9.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0.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2.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3.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14.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5.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16.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1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1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0.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22.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3.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2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5.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3.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4.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⑬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⑭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

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9. 전자정부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1.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7.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8.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0.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2.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3.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 ⑯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

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장·자치분권국장·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자치새마을협력과·주민과·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2.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11.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14.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15.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16.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18.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19.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0.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21.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22.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23.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24.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2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2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27.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2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8.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 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홍보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⑨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주민자치혁신과·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면·동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18.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21.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3. 지역사회혁신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 통계·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7.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8. 이장·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9.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괄·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과제 모델 정립 및 확산·전파
1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평가 및 이행 관리
12. 정부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3. 지역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 민관협력 지원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5. 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면·동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1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개선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6.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7.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1.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2.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3.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4.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6.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7.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8.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사회연대경제지원과·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⑯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범부처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 촉진 지원
 6. 사회연대경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해외사례 조사·분석
 7.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8. 사회연대경제 금융, 판로 확대, 교육·훈련 등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사회연대경제 가치평가 등 성과관리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1.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연계 및 협력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연대경제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⑰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국제화 추진 지원
 9.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 ⑱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의 추천·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0.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2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2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2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24.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점검 및 평가
25.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2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2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 ①⑨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

- 평가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감독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 ②⑩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균형발전진흥과·기본사회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⑪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지정·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②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승인, 평택 지역개발 사업의 지도관리·평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부처 기본사회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2. 기본사회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제도의 운영·개선
3.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분석 및 연구·개발
4. 분야별 기본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관리
5. 지역별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동향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기본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7. 기본사회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 추진
8.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기본사회위원회 사무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1.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및 협력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국장·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와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8. 지방재정 분석·진단 업무의 총괄
 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
 10. 지방재정위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3.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14.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9.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 ⑦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9.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 ⑧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공유재산 제도의 연구·개선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특례의 관리·운영
7.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감독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 ⑨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⑩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7.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운용
 8.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10.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1.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개선
13.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4. 주민세 제도의 연구·개선
15.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6.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17.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18.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19.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20. 지방세 통계 조사·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21.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2.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24.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25.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징수 등 지도·점검
26.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⑪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분석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개선 및 운영
 3. 취득세·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개선

4.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5. 재산세·자동차세 제도의 연구·개선
6. 재산세·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7.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관리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 ⑫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3. 내국·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연구·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개선
 8.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홍보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현장점검 및 공개
- ⑬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개정에 관한 지원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 ⑭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민생경제지원과·지방공기업정책과·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⑮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

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조정
6.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7.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1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1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7.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1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시상
12.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13. 지방규제개혁 교육·홍보
1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1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⑪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⑮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사채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⑯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19.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제11조2의 및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참여혁신국) ① 참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국민참여정책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6.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7.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8.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10.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2.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4.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5.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16.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7. 행정기관의 공모전 제도 운영 및 개선
18.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 ⑤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⑥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⑦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직국에 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3.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7. 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⑤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
리

⑥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
리

⑦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
리

제18조제3항 중 “승강기정책과”를 “재난안전연구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1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예방안전제도과·안전개선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
를 “예방안전제도과·안전개선과·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로
한다.

⑦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예측
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제19조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20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 및 국제회의 총괄

18.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재난안전 분야 해외자료 수집·분석 및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 제19조의2제3항 중 “사회재난정책과·재난안전조사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사회재난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을 “재난안전점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통계관리·보존 및 제공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5. 유·도선안전협회의 지도·감독
 16. 유·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별표 2 중 총계 “1,635”를 “1,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05”를 “1,62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5”를 “36”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9”을 “5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3”을 “50”으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30”을 “35”로 한다.
- 별표 2의2 중 총계 “1,635”를 “1,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05”를 “1,62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5”를 “36”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9”을 “5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3”을 “50”으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30”을 “35”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	0명	2026년 9월 30일까지
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제도과	9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라.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기본사회정책과	6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마.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바. 참여혁신국 국민참여정책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6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삭 제>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조의2 및 제8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 제30호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데이터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팀장·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	⑥ -----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데이터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팀장·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 ----- ----- ----- -----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2. (생략)

<신 설>

3. ~ 9. (생략)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부 내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협의체 운영

3.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4.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⑦ -----

-----.

1.·2. (현행과 같음)

2의2.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3. ~ 9. (현행과 같음)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5.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6.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 조정	1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 · 국 지정 및 협의 · 조정	⑨ ----- ----- ---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 조정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 · 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 · 조정	<삭 제>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 · 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 · 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삭 제>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 · 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 · 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삭 제>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 · 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4. ~ 19. (생략)	1. ~ 16. (현행 제4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20.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총괄	<삭 제>
16. 삭제	17.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1. · 22. (생략)	17. · 18. (현행 제21호 및 제22호와 같음)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⑩ ~ ⑫ (생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⑭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의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⑭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관리
5. ~ 12. (생략)
<신설>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정부혁신국장·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⑬ -----

----.

1. 부내 -----

2. 부내 -----

3. 부내 업무 관련 -----

4. 부내 -----

5.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의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디지털기반안전과·디지털보안정책과·지역디지털협력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공공인공지능혁신과·공공데이터정책과·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u>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u>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u> 7.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9.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3.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5.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23.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4. 공공부문 인공지능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공부문 인공지능서비스 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	--	---

27.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26.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9.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⑥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위한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역량 진단, 지표관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u>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시행</u>	<u>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u>	<u>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u>
<u>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u>
<u>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u>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u>
<u>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u>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
<u>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u>	<u>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u>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u>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u>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u>
<u>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u>	<u>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u>

<u>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u>
<u>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u>	<u>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u>	<u>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u>
<u>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u>	<u>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u>
<u>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u>	<u>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u>
<u>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u>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u>
<u>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u>
<u>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u>	<u>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u>	<u>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u>

2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
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
항

⑦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
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
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
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
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
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
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
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

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
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
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
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
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
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사항
 1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
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
항

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
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
의 개발·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
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
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
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
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
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
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
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
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
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
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행정정보공유과 및 국민맞춤서비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8.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⑧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⑨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⑩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5.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법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준의 제정·개정 17.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8.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9.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0.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2.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3.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14.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5.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	---	---	--

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16.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1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1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0.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22.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3.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2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⑫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5.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3.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4.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	--	---	---

8. <u>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u>	<u>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u>	<u>운영</u>	<u>항</u>
9. <u>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8. <u>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7. <u>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u>	5.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10. <u>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u>	9. <u>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8.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u>	6.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11. <u>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u>	10. <u>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u>	9. <u>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u>	7.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u>
12. <u>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u>	⑬ <u>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10. <u>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u>	8. <u>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13. <u>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u>	⑭ <u>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1. <u>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u>	9. <u>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14. <u>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u>	1.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u>	12. <u>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10. <u>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⑬ <u>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2.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시행</u>	13. <u>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11. <u>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u>
1.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u>	3.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u>	14. <u>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u>	12. <u>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u>
2. <u>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u>	4. <u>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u>	15. <u>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u>	
3. <u>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u>		16. <u>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u>	
4. <u>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17. <u>「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u>	
5. <u>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6. <u>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u>			

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7.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18.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8.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9.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9.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20.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⑭ 공공지능데이터국에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및 공공데이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21.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⑮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22.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23.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8.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9. 전자정부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5.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⑮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11.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6.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13.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7.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8.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0.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2.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3.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

⑪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

<u>한 사항</u>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⑰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u>의 구축 및 운영</u>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	<u>진단</u>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u>화에 관한 사항</u>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	--	---	---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⑱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 혁신과·공공서비스통합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⑲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㉔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립,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

-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보·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9.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10.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㉕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
의·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
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
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
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
비스의 구축 및 운영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
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
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
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
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
준의 제정·개정
17.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8.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
·점검
19.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
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
20.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의 수립·시행 및 평가
2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
기준·절차의 수립·시행
24.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
화
2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

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6.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27.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28.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2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제10조(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직국에 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

제10조(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장·자치분권국장·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7의2.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자치새마을협력과·주민과·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

<u>의 수립·시행</u>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2. 공무원 충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 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5.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20.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u>원 인사교류의 지원</u>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2.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22.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u>의 운영·지원</u>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11.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14.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 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15.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16.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18.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
---	---	--	--

9. <u>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u>	<u>원회 운영</u>	분장한다.	<u>및 관련 법령의 관리</u>
10. <u>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u>	19. <u>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u>	1. <u>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u>	28. <u>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u>
11. <u>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u>	20. <u>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u>	2. <u>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u>	⑥ <u>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2. <u>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u>	21. <u>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u>	3. <u>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u>	1. <u>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u>
13. <u>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u>	22. <u>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u>	4. <u>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u>	2. <u>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u>
14. <u>삭제</u>	23. <u>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u>	5. <u>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3. <u>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u>
15. <u>삭제</u>	24. <u>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u>	6. <u>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4. <u>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u>
16. <u>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u>	25. <u>「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u>	⑥ <u>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5. <u>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u>
17. <u>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u>	26. <u>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u>	1. <u>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u>	6. <u>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u>
18. <u>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u>	27. <u>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u>	2. <u>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u>	7. <u>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u>
19. <u>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3. <u>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u>	8. <u>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u>
20. <u>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4. <u>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u>	9. <u>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u>
⑤ <u>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u>			10. <u>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u>
			⑦ <u>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u>

<u>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u>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 · 추진</u>
5. <u>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2. <u>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u>
⑦ <u>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3. <u>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u>
1. <u>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 · 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4. <u>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u>
2. <u>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5. <u>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u>
	6. <u>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 · 협조</u>
	7. <u>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 · 감독</u>
	8. <u>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u>
	9. <u>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 · 지원</u>
	10. <u>이북5도에 대한 지도 · 감독</u>
	⑧ <u>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u>
	2. <u>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 · 연구</u>

3. <u>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u>
4. <u>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5. <u>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u>
6. <u>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u>
7. <u>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u>
8. <u>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 · 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u>
9. <u>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u>
10. <u>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u>
11. <u>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u>
12. <u>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 · 홍보</u>
13. <u>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u>
⑨ <u>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u>

과·주민자치혁신과·자치분권
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 및 선
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
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
의 연구·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
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
획·운영 및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
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

·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
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
·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
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
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
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
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동 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
17.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
방안 연구 및 개선
18.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21.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
획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3. 지역사회혁신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 통계·조사·
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
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7.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8. 이장·통장 제도에 관한 연
구 및 개선
9.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
괄·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과제 모델 정립 및 확산
· 전파

1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평가 및 이행 관
리
12. 정부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3. 지역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 민관협력 지원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
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
영
15. 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
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의 협의 및 총괄·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

- 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면·동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1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개선
-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6.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7.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1.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2.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3.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4.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6.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7.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8.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사회연대경제지원과·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⑯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범부처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 촉진 지원
6. 사회연대경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해외사례 조사·분석
7.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에 관

한 사항

8. 사회연대경제 금융, 판로 확대, 교육·훈련 등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사회연대경제 가치평가 등 성과관리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1.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연계 및 협력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연대경제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
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
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
산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
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
굴 및 명품화·국제화 추진
지원
 9.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
원
- ⑱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
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
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
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
도의 기획 및 지원

-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1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 20.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 2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 2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조직의 육성 및 지원
- 2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24.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점검 및 평가

- 25.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2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 2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 2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 ⑲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 2.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평가
-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감독
-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

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
자 재산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
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
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
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
· 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㉔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
과· 균형발전진흥과· 기본사회
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
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한다.

㉕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
무의 총괄·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
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
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
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㉔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평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위한 교육·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부처 기본사회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2. 기본사회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제도의 운영·개선

3.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분석 및 연구·개발

4. 분야별 기본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관리

5. 지역별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 동향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기본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7. 기본사회 관련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추진

8.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기본사회위원회 사무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1.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및 협력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 · 민간협력과 · 사회통합지원과 ·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 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 · 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 · 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 · 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② 지방재정국장 · 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 · 재정협력과 · 교부세과 · 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 · 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5.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 · 활용 및 보급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 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부담의 협의 · 조정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20.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大賞) 선정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의 제정·개정 및 운영
2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 개선 및 통계관리
22.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 체계의 구축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 영 및 제도개선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 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수입의 산정 및 배정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 에 관한 사항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방재정 분석·진단 업무의 총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 ·평가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 의 운영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 한 사항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 제의 운영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10.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 도의 기획 및 지원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 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11.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 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한다)	9.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 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1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 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 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3.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⑦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관리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 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 리 등 재정 집행 지원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기준의 운영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5.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감독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⑨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⑩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9.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⑧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운영 및 조정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3. 공유재산 제도의 연구·개선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개선
8.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6.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6. 공유재산특례의 관리·운영		
	7.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u>관리</u>	<u>7.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운용</u>
<u>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u>	<u>8.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u>
<u>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u>	<u>9.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u>
<u>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u>	<u>10.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u>
<u>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u>	<u>11.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u>
<u>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u>	<u>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개선</u>
<u>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u>	<u>13.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u>
<u>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u>	<u>14. 주민세 제도의 연구·개선</u>
<u>1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u>	<u>15.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u>
<u>1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u>	<u>16.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u>
<u>1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u>	<u>17.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u>
	<u>18.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u>
	<u>19.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 통계연감 발간</u>
	<u>20. 지방세 통계 조사·분석 및</u>

<u>총괄</u>	<u>세수 추계기법의 연구</u>
<u>20.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u>	<u>21.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u>
<u>2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u>	<u>22.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u>
<u>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u>	<u>23.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u>
<u>23.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u>	<u>24.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 관리 지원</u>
<u>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u>	<u>25.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징수 등 지도·점검</u>
<u>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26.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및 관리</u>
<u>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u>	<u>⑪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u>	<u>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분석</u>
<u>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u>	<u>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개선 및 운영</u>
	<u>3. 취득세·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개선</u>
	<u>4.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 지</u>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홍보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원 및 법령해석

5. 재산세·자동차세 제도의 연구·개선

6. 재산세·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7.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 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관리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⑫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3. 내국·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연구·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개선

8.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홍보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업무 총괄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현장점검 및 공개

⑬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 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및 운영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 · 개정 에 관한 지원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 보고서 작성 지원

⑭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 민생경제지원과 · 지방공기업정책과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⑮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 · 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 · 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 · 조정
6.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7.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1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1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7.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

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1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시상

12.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13. 지방규제개혁 교육·홍보

1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1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⑰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
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
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
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
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
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
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⑱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
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
채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의 관리·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
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신설을 위
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
시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
스템의 구축·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 ⑬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주민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19.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삭 제>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	--	--	---	--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
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
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
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동 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
방안 연구 및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22.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

-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의 협의 및 총괄·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
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협
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을 위한 사무의 협의·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
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
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 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면·동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
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장·통장 제도에 관한 연
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
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
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
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
에 관한 사항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
개선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
· 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
지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
· 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
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
의 연구·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
· 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
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
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
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
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
요한 사항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
형발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
제도과·균형발전진흥과·지역
청년정책과·기업협력지원과
및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
무의 총괄·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
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삭 제>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
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
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

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
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
영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
의 평가 및 지도·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
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
·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운영 및 발전종합계획
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
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
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
의 수립 및 협의·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평
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
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
도·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
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
록·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를 위한 교육·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

⑤ 지역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
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
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
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
한 사항

5. 삭제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사업 추진

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
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

업 지원

8의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9의2.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9의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
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
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
축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조직의 육성 및 지원

1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5.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
의 지도·점검 및 평가

1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
보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
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의2.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
업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의3.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
치 전략 수립 및 각종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
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
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
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
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
산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

및 제도개선

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
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
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
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

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 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국장·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제12조(참여혁신국) ① 참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국민참여정책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4. <u>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u>	7. <u>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u>	2. <u>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u>	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5. <u>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u>	8. <u>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 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평가</u>	3. <u>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u>	6. <u>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u>
6.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u>	9. <u>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u>	4. <u>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u>	7. <u>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u>
7. <u>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u>	10. <u>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u>	5. <u>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u>	8. <u>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u>
8. <u>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u>	11. <u>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u>	6. <u>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u>	9. <u>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u>
9. <u>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u>	12. <u>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7. <u>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u>	10. <u>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0. <u>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u>	④ <u>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8. <u>지방재정 분석·진단 업무의 총괄</u>	11. <u>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u>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 <u>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u>	9. <u>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u>	12. <u>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u>
12. <u>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u>	2. <u>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u>	10. <u>삭제</u>	13. <u>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u>
13. <u>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3. <u>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1. <u>삭제</u>	14. <u>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u>
⑤ <u>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4. <u>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2. <u>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15. <u>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u>
1. <u>중앙·지방재정의 연계 관리</u>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	13. <u>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경보의 발령</u>	16. <u>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u>
		14. <u>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u>	
		15. <u>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u>	

16.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 운영	항을 분장한다.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
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17. 행정기관의 공모전 제도 운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영 및 개선	분석·관리	전과
분장한다.	18.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	19.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	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
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리	리 등 재정 집행 지원	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	⑤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의 제정·개정 및 운영	분장한다.	기준의 운영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	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개선 및 통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수립 및 시행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회계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수입의 산정 및 배정	·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	례의 발굴·확산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	1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영에 관한 지도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	및 교육·홍보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	크 구축 및 운영
·평가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	달에 관한 제도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	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	9.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개선
제의 운영	항	운영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10. 삭제	및 개선
리	및 개선	11. 삭제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
9.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	12. 삭제	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립·시행	⑧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	및 총괄·조정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운영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	항을 분장한다.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에 대한 실태 점검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운영	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	및 조정	총괄·조정
⑦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	원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u>정·개정 및 운영</u> 3. <u>공유재산 제도의 연구·개선</u> 4. <u>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u> 5. <u>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u>공유재산특례의 관리·운영</u> 7. <u>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u> 8. <u>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u> 9. <u>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감독</u> 10. <u>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u> ⑨ <u>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⑩ <u>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u> 2. <u>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u>	19. <u>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u> 20. <u>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21. <u>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u> 22. <u>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u> 23. <u>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u> 24. <u>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u> 25. <u>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⑥ <u>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2. <u>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u> 3. <u>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u> 4. <u>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u>	<u>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u> 3. <u>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u> 4. <u>「지방세기본법」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회신</u> 5. <u>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연구·개선</u> 5의2. <u>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u> 6. <u>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운영</u> 7. <u>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u> 8. <u>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u> 9. <u>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u> 10. <u>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u> 11. <u>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개선</u> 12. <u>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u> 13. <u>주민세 제도의 연구·개선</u> 14. <u>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u>	<u>품질 관리</u> 5. <u>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u> 6. <u>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u> 7. <u>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u> 8. <u>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u> 9. <u>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10. <u>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u> 11. <u>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u> ⑦ <u>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u> 2. <u>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u> 3. <u>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u> 4. <u>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	---	--	--

<u>법령해석</u>
<u>15.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u>
<u>16.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u>
<u>17.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u>
<u>1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 통계연감 발간</u>
<u>19. 지방세 통계 조사·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u>
<u>20.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u>
<u>21.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u>
<u>22.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u>
<u>2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 관리 지원</u>
<u>24.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징수 등 지도·점검</u>
<u>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및 관리</u>
<u>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u>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u>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u>
<u>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u>
<u>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u>
<u>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u>
<u>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u>
<u>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u>

<u>⑪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분석</u>
<u>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개선 및 운영</u>
<u>3. 취득세·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개선</u>
<u>4.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u>
<u>5. 재산세·자동차세 제도의 연구·개선</u>
<u>6. 재산세·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u>
<u>7.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u>
<u>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u>
<u>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 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u>
<u>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관리</u>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 ⑫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3. 내국·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연구·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개선
 8. 레저세·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홍보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업무 총괄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현장점검 및 공개
- ⑬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 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개정 에 관한 지원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 보고서 작성 지원

⑭ 지역경제지원국에 지역경제과·지방규제혁신과·지역금융지원과·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⑮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조정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국제화 추진 지원

12.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 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시상

7.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8. 지방규제개혁 교육·홍보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 <17>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평가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감독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정보의

-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 <18>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19>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사채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

스텝의 구축·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조(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직국에 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3. 공무원 충정원제도 및 다음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 건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

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 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7. 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⑤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⑥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⑦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u>분장한다.</u> <u>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u>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② (생략)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 및 <u>승강기정책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 <u>재난안전연구개발과</u>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u>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u>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u> <u>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u> <u>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u>

	<u>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u>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u> <u>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u> <u>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u>
⑦ (생략)	⑫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예방정책국에 <u>예방안전제도과·안전개선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⑧ ----- <u>예방안전제도과·안전개선과·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u> ----- ----- ----- ----- -----.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⑪ <u>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제></u>
1. <u>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제도개선 권고</u>	
2. <u>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u>	

<u>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운영</u>
3. <u>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 운영</u>
4. <u>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 · 운영 및 총괄·조정</u>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 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6. <u>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 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 리 지도·점검</u>
7. <u>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 진</u>
8. <u>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 · 통계관리·보존 및 제공</u>
9. <u>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 사고예방 홍보</u>
10. <u>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중 합대책의 추진</u>
11. <u>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u>
12. <u>삭제</u>
13. <u>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u>

<u>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 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14. <u>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15. <u>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 정지원에 관한 사항</u>	
16. <u>유·도선안전협회의 지도· 감독</u>	
17. <u>유·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⑫ (생략)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 ⑯ (생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연재난설) ① ~ ③ (생 략)	제19조(자연재난설)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u>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 진에 관한 사항</u>	17. <u>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 책 및 국제회의 총괄</u>
<신설>	18. <u>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 항</u>
<신설>	19. <u>재난안전 분야 해외자료 수 집·분석 및 국제협력 전문가</u>

18. (생 략) ⑤ ~ ⑭ (생 략)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② (생 략)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u>사회재난 정책과·재난안전조사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u>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u>재난안전연구개발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u>양성</u> 20. (현행 제18호와 같음)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회재난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u>----- ----- ----- -----. ④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u>재난안전점검과</u>장----- -----.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	<u>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5. <u>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u> 6. <u>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u> 7. <u>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운영 및 총괄·조정</u>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통계관리·보존 및 제공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	--	--

<신 설>	13.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 설>	14.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유·도선안전협회의 지도·감독
<신 설>	16. 유·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35</u>	<u>1,653</u>	+18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623</u>	+18
고위공무원단	<u>35</u>	<u>36</u>	+1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3</u>	<u>24</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9</u>	<u>51</u>	+2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2</u>	<u>14</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3</u>	<u>50</u>	+7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30</u>	<u>35</u>	+5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35</u>	<u>1,653</u>	+18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623</u>	+18
고위공무원단	<u>35</u>	<u>36</u>	+1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3</u>	<u>24</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9</u>	<u>51</u>	+2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2</u>	<u>14</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3</u>	<u>50</u>	+7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30</u>	<u>35</u>	+5
·	·	·	
·	·	·	